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 2.1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 1 절 내국민 대우

제 2.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3 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 년도 GATT 제 3 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이와 동등한 규정이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 1 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정부의 경우, 그 지역정부가 속한 당사국의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그 지역정부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3. 제 1 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관세

제 2.3 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관세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라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3. 각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적용한다.
 - 가. 부속서 2-라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적용가능한 관세율, 또는
 - 나. 최혜국 적용 관세율

4.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된 이후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 간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그들의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 가. 이 협정에 따라 어떠한 특혜관세도 부여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 외의 자국의 관세를 수정하는 것
 - 나. 일방적인 감축을 한 후에 부속서 2-라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것, 그리고
 - 다. 이 협정,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또는 세계무역기구 협정하의 모든 협정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 2.4 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그리고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상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용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입된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 가. 제 12 장(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따라 일시 입국의 자격을 갖춘 기업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장비
 - 나. 언론매체 또는 음향이나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장비 및 영화촬영 장비
 - 다. 스포츠용으로 수입되는 상품 및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그리고
 - 라.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제 1 항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따른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가. 그 상품이 일시 입국을 요청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하여 수입될 것
- 나. 그 상품이 그 인에 의하여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 다.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 라.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담보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달리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 또는 다른 형태의 담보를 수반할 것¹
- 마.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 바. 그 상품이 그 인의 출국 시 또는 1년 이내 일시 반입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그 당사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그 밖의 더 긴 기간 내에 수출될 것, 그리고
- 사.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수입될 것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제 1 항라호에 따른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하여만 수입될 것

¹다른 형태의 통화 담보가 사용되는 경우, 그 담보는 이 호에서 언급된 담보 요건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아니한다. 당사국이 비통화 형태의 담보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담보는 그 당사국이 사용하는 기존 형태의 담보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아니한다.

-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 임대 또는 전세 또는 시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 다.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 라. 그 상품이 일시 수입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간 내에 수출될 것, 그리고
 - 마.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수입될 것
4. 상품이 제 1 항에 따라 무관세 일시 반입이 허용되고 당사국이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부과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부과할 수 있다.
- 가. 그 상품의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모든 부과금, 그리고
 - 나. 자국 법에 따라 규정된 그 밖의 모든 부과금 또는 벌금
5. 제 8 장(투자) 및 제 9 장(국경간 서비스 무역)을 조건으로
-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그 컨테이너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로를 통하여 자국 영역에서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나. 당사국은 단지 컨테이너의 입항 항구와 출항 항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당사국은 컨테이너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그 당사국이 부과하는, 담보를 포함하는 의무의 해제에 대하여 그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항 항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라.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가져오는 운송선이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운송선과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특정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그 상업용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하여만 수입될 것, 또는
- 나. 그 인쇄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 광고물의 1 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할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중 어떤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제 2.6 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부속서 2-마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²

2. 한쪽 당사국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비관세조치

제 2.7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11 조에 따른 경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를 따른 경우를 제

²이 항은 외국무역지대에 담보부 또는 유사한 상태로 수입되고,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후 외국무역지대에 담보부 또는 유사한 상태로 재수입되지 않는 품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 년도 GATT 제 11 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이와 동등한 규정이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양 당사국은 제 1 항에 따라 통합된 1994 년도 GATT 상의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수출가격 요건 및 수입가격 요건을 금지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3. 당사국이 상품의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비당사국으로의 수출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 협정은 그 당사국이 다음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그 비당사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는

나. 그 당사국의 상품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하는 조건으로,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소비되지 아니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비당사국으로 재수출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

4.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가격설정, 마케팅 및 유통 체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을 피할 목적으로 협의한다.

5.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는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8 조 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한쪽 당사국은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 조세 또는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

내국세 및 배출 규정에 대한 최혜국 대우

자동차 상품에 관한 내국세 및 배출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비당사국과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그 비당사국이 원산지인 동종 상품에 부여되는 것보다 더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부여한다.

제 2.10 조 세관 사용자 수수료

1. 한쪽 당사국은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세관 사용자 수수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조의 어떤 것도 양 당사국에 적용되는 1994 년도 GATT 제 8 조를 변경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 2.11 조 관세평가협정

「관세평가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모든 후속 협정은 그들의 상호무역에서 양 당사국이 적용하는 관세 평가 규칙을 규율한다.

제 2.12 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제 2.3 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어느 해의 어느 상품의 총수입량이 부속서 2-바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의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속서 2-바의 자국 양허표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제 2 항부터 제 7 항까지와 합치하게, 더 높은 수입관세의 형태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른 관세는 현행 최혜국 적용관세율,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 일에 유효한 최혜국 적용관세율, 또는 부속서 2-바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 1 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는 부속서 2-바의 당사국 양허표에 따라 정해지며, 부속서 2-라에 정의된 대로 관세가 부과된 당해 연도 말까지만 유지된다.
4. 당사국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음을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 가. 제 7 장(무역구제)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
 - 나.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상의 조치, 또는
 - 다. 세계무역기구의 「농업에 관한 협정」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따른 조치
5. 각 당사국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조치를 부과한 후 60 일 이내에 그 조치를 적용하는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수출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6. 이 조의 이행 및 운영은 제 2.14 조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논의 및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 당사국은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 가. 부속서 2-바의 당사국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의 만료 후, 그리고
 - 나. 관세율할당에 따른 상품에 대하여 쿼터 내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

제 2.13 조 관세율할당 운영 및 이행

1. 부속서 2-사에 규정된 대로 관세율할당을 수립한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3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 및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및 그 밖의 모든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이러한 관세율할당을 이행하고 운영한다.
2.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자국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한 자국의 절차는 투명하고, 공개되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시장조건에 반응하고, 무역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고 최종 사용자의 기호를 반영한다. 그리고

- 나. 수입하는 법적 및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당사국의 기업이나 인은 관세율할당에 따라 쿼터 배분을 신청하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 3. 각 연도에 걸쳐 당사국의 운영당국은 각 관세율할당의 운영 절차,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운영당국이 지정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시의적절하게 공표한다.
- 4. 한쪽 당사국은 부속서 2-사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새로운 또는 변경된 운영을 적용하기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 5. 당사국은 수입자들이 관세율할당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한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관세율할당 운영에 대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품무역위원회의 차기 회의에서 협의한다. 협의시 양 당사국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한다.

제 4 절 상품무역위원회

제 2.14 조 상품무역위원회

-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위원회는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어느 때에도 회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 가. 양 당사국에 의한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을 점검한다.
 -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 제안을 검토한다.
 - 다. 이 장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 그리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변경에 합치되도록 이 협정의 그 밖의 조항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를 공동 위원회에 제안한다.
 - 라.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관세 또는 비관세 문제를 검토한

다.³ 그리고

마. 다음이 제기한 양 당사국에 의한 이 장의 이행 및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1) 한쪽 당사국, 또는

2) 제 4 항에 따라 설치된 모든 소위원회

3. 위원회가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을 그러한 회부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제 20.1 조(공동위원회)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회합을 요청할 수 있다.

4. 한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 및 이 장의 부속서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90 일 이내 또는 상호 합의된 때에 소위원회가 설치되고 각 당사국으로부터 관련 공무원들의 회의를 소집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검토를 위하여 어떠한 사안이라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가 수정 또는 추가에 대하여 합의한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이 장의 수정 또는 추가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취한다.

6. 이 장은 당사국이 위원회가 검토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원산지 판정이나 사전 심사결정을 내리거나, 이 협정에 따른 사안의 해결이 있을 때까지 그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양 당사국은 부속서 2-나에 규정된 대로 임산물 무역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8. 양 당사국은 부속서 2-다에 규정된 대로 자동차 상품 무역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5 절 정의

³ 양 당사국은 이 항에 따라 라벨링 및 정의를 포함한 아이스와인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제 2.15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이란 기록된 시각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 대중에 대한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종류의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자료가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각각의 필름 또는 기록물의 1 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하고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농산물이란 세계무역기구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1 에 열거된 상품을 말하며, 세계무역기구에서 합의된 모든 후속적인 변경은 이 협정에서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자동차상품이란 다음의 상품을 제외하고 HS 제 40 류, 제 84 류, 제 85 류, 제 87 류 및 제 94 류에 해당하는 모든 형태의 자동차, 시스템 및 그 부품을 말한다.

가. 트랙터(HS 제 8701.10 호, 제 8701.20 호, 제 8709.11 호, 제 8709.19 호 및 제 8709.90 호에 포함)

나. 설상차와 골프카트(HS 제 8703.10 호에 포함), 그리고

다. 건설기계(HS 제 8413.40 호, 제 8425.11 호, 제 8425.19 호, 제 8425.31 호, 제 8425.39 호, 제 8425.41 호, 제 8425.42 호, 제 8425.49 호, 제 8426.11 호, 제 8426.12 호, 제 8426.19 호, 제 8426.20 호, 제 8426.30 호, 제 8426.41 호, 제 8426.49 호, 제 8426.91 호, 제 8426.99 호, 제 8427.20 호, 제 8428.10 호, 제 8428.20 호, 제 8428.31 호, 제 8428.32 호, 제 8428.33 호, 제 8428.39 호, 제 8428.40 호, 제 8428.60 호, 제 8428.90 호, 제 8429.11 호, 제 8429.19 호, 제 8429.20 호, 제 8429.30 호, 제 8429.40 호, 제 8429.51 호, 제 8429.52 호, 제 8429.59 호, 제 8430.10 호, 제 8430.20 호, 제 8430.31 호, 제 8430.39 호, 제 8430.41 호, 제 8430.49 호, 제 8430.50 호, 제 8430.61 호, 제 8430.69 호, 제 8431.10 호, 제 8431.31 호, 제 8431.39 호, 제 8431.41 호, 제 8431.42 호, 제 8431.43 호, 제 8431.49 호, 제 8474.10 호, 제 8474.20 호, 제 8474.31 호, 제 8474.32 호, 제 8474.39 호, 제 8474.80 호, 제

8474.90 호, 제 8479.10 호, 제 8701.30 호, 제 8704.10 호, 제 8705.10 호, 제 8705.20 호, 제 8705.40 호 및 제 8705.90 호에 포함)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미화 1 달러 또는 당사국의 통화에서 이와 동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파열·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소비된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실제로 소비되거나

나. 상품의 가치, 형태 또는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거나 다른 상품이 될 정도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제조된 것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스포츠용으로 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 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이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 년도 GATT 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인쇄된 광고물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 49 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그리고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관측, 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수리 또는 개조는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⁴을 만드는 작업이나 공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관세 철폐 양허표란 부속서 2-라의 규정을 말한다.

⁴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만드는 생산 또는 조립의 일부인 작업이나 공정은 미완성 상품의 수리가 아니다. 상품의 구성부품은 수리 또는 개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품이다.

부속서 2-가
제 2.2 조 및 제 2.7 조에 대한 예외

제 1 절
한국의 조치

1.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캐나다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제 2.2 조 및 제 2.7 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한국에 의한 조치, 그리고
- 나. 한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에 통합된 절차에 따라 시장교란을 다루기 위하여 적용하는 조치

제 2 절
캐나다의 조치

2.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한국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제 2.2 조 및 제 2.7 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다음에 대하여 그 조치의 지속, 신속한 갱신 또는 개정을 포함한 조치
 - 1) 원목의 수출
 - 2) 적용가능한 지방정부 법령에 따른 미가공 어류의 수출
 - 3) 관세율표에 언급된 관세상품분류코드 제 9897.00.00 호, 제 9898.00.00 호 및 제 9899.00.00 호에 해당하는 금지 세번 상품의 수입
 - 4) 2001 년 「소비세법」 및 2002 년 제 22 장 개정본의 기존 규정에 따라 제조업에 사용되는 무수 알코올에 대한 캐나다의 소비세
 - 5) 연안무역법 S.C.(1992 년, 제 31 장)에 따라 캐나다의 연안 무역에서 선박의 사용, 그리고

6) 와인 및 증류주의 국내 판매 및 유통, 그리고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캐나다에 의한 조치

3. 제 2 항가호 1 목에 대하여, 캐나다는 원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입허가법」에 따른 절차가 투명하고 대중이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원목 수출 통제와 관련된 「수출입허가법」의 개정 제안에 대하여 그러한 제안의 공표로부터 30 일 이내에 한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캐나다는 원목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입허가법」 절차가 국제 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원목의 수출에 대하여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하며, 원목 수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어떠한 분쟁도 세계무역기구에 따라 해결된다.

부속서 2-나
임산물 무역 소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임산물 무역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는 국제통상 공무원, 규제 공무원 및 원목 수출의 통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 가. 임산물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협정의 의무의 이행을 점검한다.
 - 나.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 간 임산물 무역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다.
 - 다. 세계무역기구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 포럼에서 임산물 무역과 관련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임산물 무역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한다.
3. 소위원회는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4. 소위원회는 관련 활동 및 결과를 상품무역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5. 한쪽 당사국이 소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임산물 무역과 관련된 사안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상품무역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부속서 2-다
자동차 상품 무역 소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자동차 상품 무역 소위원회를 설치하며, 소위원회는
 - 가. 규제, 국제무역 및 산업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자동차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성을 지닌 정부 관료를 포함한다.
 - 나. 자동차 상품 무역과 관련된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협정의 의무의 이행을 점검한다.
 - 다.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자동차 상품 무역과 관련된 사안을 협의한다.
 - 라.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의 자동차 상품 무역과 관련된 사안을 고려하기 위한 유일한 포럼이 된다.
 - 마.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자동차 대화체와 같은 자동차 상품 사안을 다루는 국제 포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자동차 상품 무역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한다.
2. 소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전문가, 이해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할 수 있다.
3. 소위원회는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 년 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4. 소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관련 활동 및 결과를 상품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속서 2-라
관세 철폐

제 1 절
양 당사국에 적용되는 단계별 양허유형

1. 양 당사국 간 상품 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합치하여 각 당사국의 각각의 관세상품분류체계에 규정된 것이다.
2. 이 부속서에 첨부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 2.3 조제 2 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 가.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A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나.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B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66.7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33.3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0 퍼센트
 - 다.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C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80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6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4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20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0 퍼센트

라.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D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 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0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8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7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60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50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40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30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20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10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0 퍼센트

마.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 철폐로부터 제외된다.

바.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F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1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1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 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0.9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81.8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72.7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63.6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54.5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45.5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36.4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27.3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18.2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9.1 퍼센트
- 11) 이행 11 년차: 0 퍼센트

3. 이 부속서, 부속서 2-바, 부속서 2-사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 가. 이행 1 년차란 제 23.4 조(발효)에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나. 이행 2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다. 이행 3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라. 이행 4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3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마. 이행 5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4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바. 이행 6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5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사. 이행 7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6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아. 이행 8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7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자. 이행 9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8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차. 이행 10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9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카. 이행 11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0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타. 이행 12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1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파. 이행 13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2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하. 이행 14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3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거. 이행 15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4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너. 이행 16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5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더. 이행 17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6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러. 이행 18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7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며. 이행 19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8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버. 이행 20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9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그리고
 - 서. 이행 21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0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4. 상품에 대한 기준관세율은 2011 년 1 월 1 일에 적용된 최혜국 관세율로 한다.
5. 제 2.3 조에 따라 관세 철폐의 목적상, 이 부속서에 첨부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 양허 단계의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캐나다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공식 통화단위의 0.001 로 표시되도록, 그리고 한국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공식 통화단위의 1 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제 2 절 한국에만 적용되는 단계별 양허유형

6. 이 절은 이 부속서에 첨부된 한국의 양허표에 열거된 상품에만 적용된다.

단계별 양허유형:

- 가. 단계별 양허유형 G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6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6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83.3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66.7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50.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33.3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16.7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0 퍼센트

나. 단계별 양허유형 H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85.7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71.4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57.1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42.9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28.6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14.3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0 퍼센트

다. 단계별 양허유형 I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기준세율의 5 퍼센트, 이행 2 년차에 기준세율의 8 퍼센트, 이행 3 년차부터 이행 9 년차까지는 매년 기준세율의 10 퍼센트 그리고 이행 10 년차에 기준세율의 17 퍼센트가 인하되어, 이행 10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5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87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77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67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57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47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37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27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17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0 퍼센트

라. 단계별 양허유형 J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과 이행 2 년차까지는 기준세율의 5 퍼센트, 이행 3 년차부터 이행 5 년차까지는 매년 기준세율의 7 퍼센트, 이행 6 년차부터 이행 8 년차까지는 매년 기준세율의 10 퍼센트, 이행 9 년차에 기준세율의 17 퍼센트, 그리고 이행 10 년차에 기준세율의 22 퍼센트가 인하되어, 이행 10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5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9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83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76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69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59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49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39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22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0 퍼센트

마. 단계별 양허유형 K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과 이행 2 년차까지는 기준세율의 5 퍼센트, 이행 3 년차부터 이행 5 년차까지는 매년 기준세율의 7 퍼센트, 이행 6 년차부터 이행 7 년차까지는 매년 기준세율의 10 퍼센트, 이행 8 년차에 기준세율의 12 퍼센트, 이행 9 년차에 기준세율의 17 퍼센트, 그리고 이행 10 년차에 기준세율의 20 퍼센트가 인하되어, 이행 10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5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9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83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76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69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59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49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37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20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0 퍼센트

바. 단계별 양허유형 L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25 퍼센트로 인하되고, 잔여 관세는 9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50.6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45.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39.4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33.7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28.1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22.5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16.9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11.2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5.6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0 퍼센트

사. 단계별 양허유형 M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 년차부터 이행 8 년차까지 기준세율이 유지되고, 이행 9 년차부터 4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100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10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10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100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100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100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100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100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75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50 퍼센트
- 11) 이행 11 년차: 25 퍼센트
- 12) 이행 12 년차: 0 퍼센트

아. 단계별 양허유형 N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7.5 퍼센트로 인하되고, 이행 2 년차부터 이행 9 년차까지 관세는 7.5 퍼센트로 유지되고, 이행 10 년차부터는 3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년차: 75.0 퍼센트
- 2) 이행 2년차: 75.0 퍼센트
- 3) 이행 3년차: 75.0 퍼센트
- 4) 이행 4년차: 75.0 퍼센트
- 5) 이행 5년차: 75.0 퍼센트
- 6) 이행 6년차: 75.0 퍼센트
- 7) 이행 7년차: 75.0 퍼센트
- 8) 이행 8년차: 75.0 퍼센트
- 9) 이행 9년차: 75.0 퍼센트
- 10) 이행 10년차: 50.0 퍼센트
- 11) 이행 11년차: 25.0 퍼센트
- 12) 이행 12년차: 0 퍼센트

자. 단계별 양허유형 O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년차: 91.7 퍼센트
- 2) 이행 2년차: 83.3 퍼센트
- 3) 이행 3년차: 75.0 퍼센트
- 4) 이행 4년차: 66.7 퍼센트
- 5) 이행 5년차: 58.3 퍼센트
- 6) 이행 6년차: 50.0 퍼센트
- 7) 이행 7년차: 41.7 퍼센트
- 8) 이행 8년차: 33.3 퍼센트
- 9) 이행 9년차: 25.0 퍼센트
- 10) 이행 10년차: 16.7 퍼센트
- 11) 이행 11년차: 8.3 퍼센트
- 12) 이행 12년차: 0 퍼센트

차. 단계별 양허유형 P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3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3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

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2.3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84.6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76.9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69.2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61.5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53.8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46.2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38.5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30.8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23.1 퍼센트
- 11) 이행 11 년차: 15.4 퍼센트
- 12) 이행 12 년차: 7.7 퍼센트
- 13) 이행 13 년차: 0 퍼센트

카. 단계별 양허유형 Q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3.3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86.7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80.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73.3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66.7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60.0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53.3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46.7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40.0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33.3 퍼센트
- 11) 이행 11 년차: 26.7 퍼센트
- 12) 이행 12 년차: 20.0 퍼센트
- 13) 이행 13 년차: 13.3 퍼센트
- 14) 이행 14 년차: 6.7 퍼센트
- 15) 이행 15 년차: 0 퍼센트

타. 단계별 양허유형 R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8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8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94.4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88.9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83.3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77.8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72.2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66.7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61.1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55.6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50.0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44.4 퍼센트
- 11) 이행 11 년차: 38.9 퍼센트
- 12) 이행 12 년차: 33.3 퍼센트
- 13) 이행 13 년차: 27.8 퍼센트
- 14) 이행 14 년차: 22.2 퍼센트
- 15) 이행 15 년차: 16.7 퍼센트
- 16) 이행 16 년차: 11.1 퍼센트
- 17) 이행 17 년차: 5.6 퍼센트
- 18) 이행 18 년차: 0 퍼센트

파. 단계별 양허유형 S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

- 1) 매년 12 월 1 일부터 4 월 30 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 년차부터 이행 15 년차까지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 2) 5 월 1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 년차부터 이행 7 년차까지 기준세율이 유지되고, 이행 8 년차부터 8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

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이행 1 년차: 100 퍼센트
- 2) 이행 2 년차: 100 퍼센트
- 3) 이행 3 년차: 100 퍼센트
- 4) 이행 4 년차: 100 퍼센트
- 5) 이행 5 년차: 100 퍼센트
- 6) 이행 6 년차: 100 퍼센트
- 7) 이행 7 년차: 100 퍼센트
- 8) 이행 8 년차: 87.5 퍼센트
- 9) 이행 9 년차: 75.0 퍼센트
- 10) 이행 10 년차: 62.5 퍼센트
- 11) 이행 11 년차: 50.0 퍼센트
- 12) 이행 12 년차: 37.5 퍼센트
- 13) 이행 13 년차: 25.0 퍼센트
- 14) 이행 14 년차: 12.5 퍼센트
- 15) 이행 15 년차: 0 퍼센트

하. 단계별 양허유형 T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되어, 이행 7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연도	관세율(퍼센트)
이행 1 년차	4.2
이행 2 년차	3.5
이행 3 년차	2.8
이행 4 년차	2.1
이행 5 년차	1.4
이행 6 년차	0.7
이행 7 년차	0

- 거. 단계별 양허유형 U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되어, 이행 3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연도	관세율(퍼센트)
이행 1 년차	3.3
이행 2 년차	1.6
이행 3 년차	0

- 너. 단계별 양허유형 X 의 품목에 대하여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2005 년 4 월 13 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WT/Let/492(대한민국의 양허표 LX 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본) 및 그 개정사항에 규정된 약정의 이행에 대한 한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국의 양허표

별도로 첨부된 양허표

캐나다의 양허표

별도로 첨부된 양허표

부속서 2-마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한국의 영역에서 캐나다의 영역으로 재반입되고, 캐나다 「해상법」에 따라 등록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 89 류의 다음 상품에 대하여, 캐나다는 그러한 상품의 수리 또는 개조의 가치에 부속서 2-라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 제8901.10.10호
- 제8901.10.90호
- 제8901.20.10호
- 제8901.20.90호
- 제8901.90.91호
- 제8901.90.99호
- 제8902.00.10호
- 제8904.00.00호
- 제8905.10.00호
- 제8905.20.10호
- 제8905.20.20호
- 제8905.90.10호
- 제8905.90.90호
- 제8906.90.91호
- 제8906.90.99호

부속서 2-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한국에 대한 농업 긴급수입제한품목

대상 품목, 발동수준 및 최대 관세율

1. 이 부속서는 제 2.12 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원산지 상품,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 그리고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하여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관세율을 규정한다.

2.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아래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 이 된 날 후에는 적용되거나 유지되지 아니한다.

가. 아래에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201.10.0000 호, 제 0201.20.1000 호, 제 0201.20.9000 호, 제 0201.30.0000 호, 제 0202.20.1000 호, 제 0202.20.9000 호, 제 0202.30.0000 호, 제 1602.50.1000 호 및 제 1602.50.900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9	10
발동수준 (메트릭톤)	17,769	18,302	18,851	19,417	19,999	20,599	21,217	21,854	22,509	23,185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HSK 세번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20.1000, 0202.20.9000, 0202.30.0000	40.0	40.0	40.0	40.0	40.0	30.0	30.0	30.0	30.0	30.0
긴급수입제한조치	72.0	72.0	72.0	72.0	72.0	54.0	54.0	54.0	54.0	54.0

관세율(퍼센트) HSK 세번 1602.50.1000, 1602.50.9000										
---	--	--	--	--	--	--	--	--	--	--

이행년도	11	12	13	14	15	16
발동수준(메트릭톤)	23,880	24,596	25,334	26,094	26,877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HSK 세번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20.1000, 0202.20.9000, 0202.30.0000	24.0	24.0	24.0	24.0	24.0	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HSK 세번 1602.50.1000, 1602.50.9000	43.2	43.2	43.2	43.2	43.2	0

나. 아래에 포함된 돼지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203.19.1000 호 및 제 0203.19.900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9	10
발동수준(메트릭톤)	6,818	7,091	7,374	7,669	7,976	8,295	8,627	8,972	9,331	9,70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22.5	22.5	22.5	22.5	22.5	15.8	14.6	13.5	12.4	11.3

이행년도	11	12	13	14
발동수준(메트릭톤)	10,092	10,496	10,916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10.1	9.0	7.9	0

다. 아래에 포함된 돼지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203.29.100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9	10
발동수준(메트릭톤)	545	567	589	613	638	663	690	717	746	776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25.0	25.0	25.0	25.0	25.0	17.5	16.3	15.0	13.8	12.5

이행년도	11	12	13	14
발동수준(메트릭톤)	807	839	873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11.3	10.0	8.8	0

라. 아래에 포함된 돼지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203.29.900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메트릭톤)	60,986	63,425	65,962	68,601	71,345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25.0	20.0	17.5	15.0	12.5	0
----------------------	------	------	------	------	------	---

마. 아래에 포함된 사과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808.10.000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9	10
발동수준 (메트릭톤)	3,600	3,708	3,819	3,934	4,052	4,173	4,299	4,428	4,560	4,697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45.0	45.0	45.0	45.0	45.0	33.8	33.8	33.8	33.8	33.8

이행년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발동수준 (메트릭톤)	4,838	4,983	5,133	5,287	5,445	5,609	5,777	5,950	6,129	6,313	해당 없음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퍼센트)	27.0	27.0	27.0	27.0	27.0	22.5	22.5	22.5	22.5	22.5	0

발동수준은 후지사과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수입되는 사과의 총메트릭톤이다.

바. 아래에 포함된 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808.20.100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9	10
발동수준 (메트릭톤)	223	230	237	244	251	259	266	274	282	291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45.0	45.0	45.0	45.0	45.0	33.8	33.8	33.8	33.8	33.8

이행년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발동수준 (메트릭톤)	300	309	318	327	337	347	358	369	380	391	해당 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27.0	27.0	27.0	27.0	27.0	22.5	22.5	22.5	22.5	22.5	0

발동수준은 동양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수입되는 배의 총메트릭톤이다.

사. 아래에 포함된 겉보리 및 쌀보리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1003.00.9010 호 및 제 1003.00.902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9	10
발동수준(메트릭톤)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① 1003.00.9010	324	324	324	324	324	243	243	243	243	243
② 1003.00.9020	299.7	299.7	299.7	299.7	299.7	224.8	224.8	224.8	224.8	224.8

이행년도	11	12	13	14	15	16
발동수준(메트릭톤)	2,500	2,500	2,500	2,500	2,500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① 1003.00.9010	194	194	194	194	194	0
② 1003.00.9020	179.7	179.7	179.7	179.7	179.7	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 이하로 반입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부속서 2-사 제 3 항을 참조할 것.

아. 아래에 포함된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에 대하여,

적용 범위: HSK 세번 제 1105.10.0000 호 및 제 1105.20.0000 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발동수준(메트릭톤)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304	304	304	304	304	228	228	228	228	228	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하여는, 부속서 2-사 제 4 항을 참조할 것.

자. 아래에 포함된 팔에 대하여,

적용 범위: HSK세번 제0713.32.9000호

이행년도	1	2	3	4	5	6	7	8
주요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수준 (메트릭톤)	238	298	357	417	476	500	524	547
중간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수준 (메트릭톤)	119	186	268	364	해당 없음			
주요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퍼센트)	412	403	394	385	376	338	325	311
중간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퍼센트)	55	40	25	15	해당 없음			

이행년도	9	10	11	12	13	14	15	16
주요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수준 (메트릭톤)	571	595	619	643	666	690	714	해당 없음
주요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퍼센트)	297	283	217	199	180	162	143	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는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반입되는 모든 물량은 선착순에 기초하여 무관세로 들어오고,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되 주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반입되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반입된다.

이행 5년차부터는 주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반입되는 모든 물량은 선착순에 기초하여 무관세로 들어온다. 어떠한 이행년도에 있어서도 주요 긴급수입

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주요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반입된다.

부속서 2-사
관세율할당의 운영 및 이행

1. 이 부속서는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한국이 적용하는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한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속서에 포함된 캐나다 원산지 상품은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 대신 이 부속서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속서에 기술된 물량의 캐나다 원산지 상품은 이 부속서에 규정된 대로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이 부속서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천연꿀

2. 가. 다호에 기재된 규정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량은 아래 명시된 어떤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각 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100
2	105
3	110
4	115
5	120
6	125
7	130
8	135
9	140
10	145
11	150
12	155
13	160
14	165
15	170
16	175
17	180
18	185
19	190
20	195
21	200

이행 21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200 메트릭톤으로 한다.

관세율할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그 승계기관에 의하여 분기별(12월, 3월, 6월 및 9월) 공매를 통하여 운영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라 제2항마호에 명시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0409.00.0000호

겉보리 및 쌀보리

3. 가. 다호에 기재된 규정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량은 아래 명시된 어떠한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각 해당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14	연간 2,500
15	무제한

이러한 관세율할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그 승계기관에 의하여 운영된다. 공사는 서면신청에 따라 선착순에 기초하여, 매년 첫째 월 첫째 영업일로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에 허가를 배분한다. 그 해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 할당내 이용가능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는 비례로 배분된다. 그 해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할당 내 이용가능한 총 물량보다 적은 경우, 허가는 그 해 내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다. 공사에 의하여 배분된 각 허가는 배분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할 때 공사에 반납되고, 반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신청자들에게 재배분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바 사호에 열거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1003.00.9010호 및 제1003.00.9020호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4. 가. 다호에 기재된 세번에 따라 반입되는 품목의 총량은 아래 명시된 어떤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각 해당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9	연간 500
10	무제한

이러한 관세율할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그 승계기관에 의하여 운영된다. 공사는 서면신청에 따라 선착순에 기초하여, 매 연도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에 허가를 배분한다. 그 연도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할당 내 이용가능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는 비례로 배분된다. 그 연도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할당 내 이용가능한 총 물량보다 적은 경우, 허가는 그 연도 내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다. 공사에 의하여 배분된 각 허가는 배분일로부터 90 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 일 기간이 만료할 때 공사에 반납되고, 반납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신청자들에게 재배분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바 아호에 열거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 1105.10.0000 호 및 제 1105.20.0000 호

맥아

5. 가. 다호에 기재된 세번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량은 아래 명시된 어떠한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때 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13,000
2	14,200
3	15,400
4	16,600
5	17,800
6	19,000
7	20,200
8	21,400
9	22,600
10	23,800
11	25,000
12	무제한

이러한 관세율할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그 승계기관에 의하여 운영된다. 공사는 서면신청에 따라 선착순에 기초하여, 매 연도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에 허가를 배분한다. 그 연도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할당 내 이용가능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는 비례로 배분된다. 그 연도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할당 내 이용가능한 총 물량보다 적은 경우, 허가는 그 연도 내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다. 공사에 의하여 배분된 각 허가는 배분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반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신청자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이 재배분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라 제6항자호에 명시된 단계별 양허유형 O의 규정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1107.10.0000호

식용대두(IP)

6. 가. 마호에 기재된 세번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 물량은 아래 명시된 어떠한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매 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5,000
2	7,500
3	10,000
4	12,500
5	15,000
6	15,400
7	15,800
8	16,200
9	16,600
10	17,000

이행 10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17,000 메트릭톤으로 한다.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한국식품공업협회 및 그 밖의 대두가공업체를 대표하는 적절한 협회를 포함하는 대두 가공업자들의 협회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한다. 그 협회는 나호에 규정된 대로 관세율할당을 배분하고 공사는 그 협회가 배분하는 물량에 대한 수입허가를 자동적으로 발급한다.

- 나. 그 협회는 수입자의 서면신청에 따라 관세율 할당을 배분한다. 서면신청은 수입자가 배분을 신청한 후 적어도 7개월 이후 운송을 위하여 IP 대두를 구매하겠다는 서명된 의향서를 수반한다. 그 협회는 수입하는 연도의 이전 연도의 4월 1일 이전에 관세율할당 배분을 시작한다. 각 허가는 그 허가가 발급되는 당해 쿼터 연도 전체 기간에 걸쳐 유효하다. 수입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선적은 그 제품이 IP 대두에 대하여 라호에 기재된 규격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독립된 제3자 검사기관으로부터의 문서를 수반한다.

- 다.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2-라 제2항마호에 명시된 단계별 양허유형 E의 규정에 따라 취급된다.

- 라. IP 대두란 95퍼센트 이상의 단일종 대두로서 이물질은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선적분의 대두를 말한다. IP 대두는 벌크 선적될 수 없으며 포대나 컨테이너로 선적된다.

마. 가호부터 라호까지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1201.00.9010호 및 제1201.00.9090호

사료용 식물(기타)

7. 가. 다호에 기재된 세번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 물량은 아래 명시된 어떠한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때 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20,000
2	25,000
3	30,000
4	35,000
5	40,000
6	45,000
7	50,000
8	55,000
9	55,000
10	무제한

관세율할당은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그 각각의 승계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수입허가를 통하여 배분된다. 등록된 배합사료제조업자, 등록된 단미사료제조업자 및 양축 농가는 당해 연도의 이전 24개월의 실적 및 그 당해 연도에 요청된 물량에 기초하여 관세율할당 물량을 받을 자격이 있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라 제2항라호에 명시된 단계별 양허유형 D의 규정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1214.90.9090호

동물용 보조사료

8. 가. 다호에 기재된 세번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 물량은 아래 명시된 어떠한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때 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500
2	600
3	700
4	700
5	800
6	800
7	900
8	900
9	1,000
10	무제한

이러한 관세율할당은 한국단미사료협회 및 한국대용유사료협회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당해 연도 이전 24개월의 실적 및 그 당해 연도에 요청된 물량에 기초하여 수입허가를 통하여 배분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라 제2항라호에 명시된 단계별 양허유형 D의 규정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2309.90.2099호 및 제2309.90.9000호